

제천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8. 10. 15. 제 천 시 장
- 회 부 일 : 2008. 10. 15.
- 상 정 일 : 2008. 10. 21.(제15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가. 제안이유

한약재의 저장, 품질검사, 전처리가공·유통을 위한 우수한약재 유통 지원시설을 설치하여 한약재의 품질관리 확산, 한방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제천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유통지원시설의 운영
 - 사업(안 제4조)
 - 한약재의 구매 및 품질검사·가공·저장·유통
 - 한약재 재배농가 또는 관련업체 등에 대한 지원
 - 지역경제에의 기여 (안 제5조)
 - 제천시·충청북도 지역 생산 한약재 우선적 구매·가공·저장 및 지역주민 이용 편의 제공
 -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한약재 품질관리 확산을 위한 운영 계획 수립
 - 한약재 품질관리등 (안 제6조)
 - 「생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 이행

- 유통지원시설의 위탁
 - 위탁운영 (안 제7조)
 -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통지원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수탁자 선정 (안 제8조)
 - 공개경쟁방식에 의하여 재정부담능력,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 사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
 - 위탁기간(안 제9조)
 -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최초 수탁자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할 수 있음
 - 수탁자의 의무, 수탁재산의 관리(안 제10조~제11조)
 - 위탁의 취소 (안 제12조)
 -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 비용의 부담
 - 이용료 (안 제13조)
 - 유통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 사용료 (안 제14조)
 - 수탁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연간 사용료는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석영)

[법적검토]

- 이 조례안은 품질이 검증된 안전한 한약재의 공급과 가공·유통을 통한 한방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4조의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따라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유통지원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2조 제1호 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약재의 단순 보관위주의 물류 시설로서의

창고기능뿐만 아니라 한약재의 품질검사·가공·저장·유통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음

- 따라서 유통지원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품질검사 수수료, 저장수수료, 가공수수료 등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탁운영시 수탁자가 공공시설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서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에서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하여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안 제14조에서 1천분의 10 이상으로 정한 것은 법적으로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음
- 사전절차 이행
 - 입법예고 : 2008. 9. 12 ~ 10. 2(20일간)
 - 물가대책위원회 : 2008. 10. 13
 - 조례규칙심의회 : 2008. 10. 14

[행정적검토]

-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은 총사업비 100억원을 민간투자로 설치하고 향후 20년간 시설원리금을 상환조건에 따라 국고와 지방비로 분할 상환하게 되어 있으며, 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안전한약재의 대량 보급으로 품질관리를 선도하고 이를 가능하게 할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여 한방관련 산업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보겠음

- 본 유통지원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약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저렴한 수수료로 품질검사를 이행하고 가공·저장 및 유통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 재산의 단순한 ‘관리위탁’이 아닌 경영전반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이라 할 수 있겠음
- 조례안 제8조에서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또는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수탁자 선정 운용방식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조례안 제9조에서 위탁기간을 정함에 있어 3년으로 하되, 최초 수탁자에 대하여는 유통지원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시행초기 농민과의 관계 구축 후 원료 약재의 안정적 확보와 고객과의 관계구축 등 영업 기반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함으로써 민간수탁자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
- 본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향후 20년간 균형재정을 도모하여 자치단체의 수입(시설사용료 수입 + 시설잔존가치)이 지출(부지매입비 + 정부지급금 중 시 부담금)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 조례안 제14조에서 민간위탁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을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향후 시설원리금과 유지비용 보전을 감안한 균형재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조정 가능한 시설 사용료의 산출 방식 등 민간위탁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계획이 마련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가. 질의요지

○ 본 시설의 수탁자 선정기준과 운영계획은?(김병창 위원)

나. 답변요지 <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

○ 수탁자 선정은 경영능력이나 재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자 하며,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파악으로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5. 소 수 의 견

“ 없 음 ”

6. 토 론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

8.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